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통관 전 수입신고를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대외 상품교역 시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HS코드를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과 함께 명시하여 불법벌채목의 국내 유입 차단 효과를 제고하고 원자재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 1의4를 통해 규정(안 제18조의3)

- 제18조의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도록 변경

나. 대상품목 추가 및 HS코드 명시(안 제18조의3 관련 별표1의4)

-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기존 7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재정리하고,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을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와 함께 명시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별표 1의4”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4제1항의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19조의 “별표 1의5”를 “별표 1의6”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의 “별표 1의6”을 “별표 1의7”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의 “별표 1의7”을 “별표 1의8”로 한다.

제22조의2의 “별표 1의8과”를 “별표 1의9와”로 한다.

제23조제1항의 “별표 1의9와”를 “별표 1의10과”로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4]

수입신고 대상품목(제18조의3 관련)

품목명	HS 코드	비고
1. 목재 펠릿	4401.31	
2. 원목	4403	
3. 제재목	4407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포함
4. 단판	4408	
5. 성형목재	4409	
6. 파티클보드	4410	
7. 섬유판	4411	
8. 합판	4412	
9. 목재 펄프	4701, 4702, 4703, 4704, 4705	

※ HS 코드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3항에 따라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를 의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3(수입신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원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말한다.</p> <p>1. <u>제재목</u></p> <p>2. <u>방부목재</u></p> <p>3. <u>난연목재</u></p> <p>4. <u>집성재</u></p> <p>5. <u>합판</u></p> <p>6. <u>목재펠릿</u></p>	<p>제18조의3(수입신고) ----- ----- ----- <u>별표 1</u>의4-----.</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18조의4(수입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u>별표 1</u>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p> <p>②~③ (생략)</p>	<p>제18조의4(수입검사 등) ① ----- ----- ----- <u>별표 1</u>의5-----.</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u>별표 1</u>의 5의 자격을 말한다.</p>	<p>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 ----- <u>별표 1</u>의 6-----.</p>
<p>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의 기준) ① (생략)</p>	<p>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②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규격·품질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인정 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이 경우 세부 지정·인정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2(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23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및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② (생략)

② ----- 별표 1의7-----.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표 1의8-----.

제22조의2(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 별표 1의9와-----.

제23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 별표 1의10과-----.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임업통상팀	
연 락 처	(042) 481 - 4085